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21번)은 당연 무효 일 안할 권리를 부르짖기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길 기대

- 교장은 교직원을 지도·감독(「초·중등교육법」 제20조)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
- 학교급식을 위해 배치된 영양교사(「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 대한민국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학교 내 각 사업부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학교장에게 예산의 편성(신청)과 집행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실은 학교장을 보좌하여 사업부서가 요구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약, 구매, 집행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한다.
-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 업무 특성상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에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급식이라는 생산 업무와 작업관리 등 조리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샌가 학교 현장은 마치 **“일 안할 권리를 달라”**는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나’ (우리 직종/렬)만 일 안 하고 편하면 그만인 곳으로 간주하여 **행정실로 업무를 떠넘기자**는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전파**하며 교직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던 영양사들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영양교사들의 논리에 동화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은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사업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한다며 수년 동안 단위과제를 신설하고 교육이나 행정이나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과제카드를 세분화하여 결국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해왔다. 특히, 흔한 말로 ‘시설’의 ‘시’ 자만 들어가면 행정실 업무라고 우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관련 공문이 시행되어 **영양교사와 영양사 단체에서 해당 문서를 행정실로 지정하자며 자료를 전파**한 것으로 안다. 조리흙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시설’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논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사 시설이라 하더라도 **급식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임을 분명히 한다**.

아래에 학교급식법 관계 법령에서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최승덕, 약칭 ‘강교노’)은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21번 「급식시설 및 안전 관리(가스 시설 검사 포함)」은 행정실 소관이 아님을 선언**한다. **상위 법령을 위반한 자체 지침은 당연무효**이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불명확한 업무의 담당을 정하고자 제정한 자체 지침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학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기를 기대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1. 시설관리

7. 안전관리

가.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압력용기·덤웨이터(dumbwaiter)검사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아래 업무 기준안 21번 중 급식시설 및 안전 관리(가스시설검사 포함) 조항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자체 지침이기에 **당연 무효이며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이다.**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21	학교급식운영일반	급식운영계획	교무	2	
		급식시설 및 안전 관리	행정	3	가스시설검사 포함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행정	3	
		학생전출입, 조·석식인원(명단)	교무	1(2)	
83	학교시설관리	학교시설관리	행정	3	
		교육청발주시설공사지원	행정	3	
		에너지절약	행정	3(2)	
		교육시설재난공제업무	행정	3	

※ 학교의 일반시설관리와 특정 용도의 시설(급식소, 특수학급, 보건실, 과학실 등등) 개선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특정 용도의 시설을 사용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을 타인이 대신할 수는 없음.